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9호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커피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커피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커피 및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라.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9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커피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커피관련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기계, 디저트 식품 및 도자(陶磁), 포장기술, 커피박 활용사업,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커피 및 커피관련 사업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강릉시민, 커피 및 커피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육성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사업자,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민, 관계전문가, 사업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 육성·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

·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클러스터(cluster)의 조성 및 관리
3.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해당 산업의 확산을 위한 세계대회 또는 박람회, 국내·외 행사 유치 등
6. 관련 가공산업의 수출기반 확대 및 판로개척
7. 공유시설의 설치 및 확충
8.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등 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단체 등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커피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커피관련 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커피관련 산업의 현안에 관한 사항
4.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커피산업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관·단체 등 및 직종 종사자
3.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공공기관 및 타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표창) 시장은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커피산업의 효율적 육성에 이바지한 실적이 뛰어난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